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6. 27.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년 5월 31일

나. 발 의 자: 유승용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4년 6월 11일

라. 상정일자: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2024. 6. 2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유승용 의원)

가. 제안이유

❍ 관내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보다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원 내에서의 음주 및 흡연행위에 대한 예방 등을 포함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어린이공원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관리·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수형)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관내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보다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원 내에서의 음주 및 흡연행위에 대한 예방 등을 포함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어린이공원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검토 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기존 제5조(행위의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해당 사항을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에 포함하도록 개정한 것임.
-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조항에서는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 기존 제5조(행위의 제한)에 따른 제한은 구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사항이 법률의 위임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우선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한 종류이며, 법 제49조에서는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 해당 규정에서는 단순히 “금지행위”에 관한 내용과 함께 같은 조 제3항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구청장도 포함될 것으로 해석되며,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안내표지 설치”에 관해서만 의무를 부과하였고,
- 법 제56조(과태료)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부과·징수”에 관해서만 구청장에게 위임하였으나, 상위 법령에서는 구청장에게

위반한 자에 대해 “퇴장을 명하는 등”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위임하지 않았음.

- 침익적인 조항을 규정할 때에는 수익적인 조항을 규정할 때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하며, 더욱이 기존 조례 제5조제8호는 상위 법령에 따른 “금지행위” 범위를 벗어남.
- 또한 법에서 규정된 내용의 조항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은 상위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등의 문제로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음.
- 위와 같은 문제로 법령의 위임이 없는 “행위의 제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나, 어린이공원 등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금지행위” 사항에 관하여는 상위법령 조항을 인용하여 안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에 포함하도록 개정함.
- 이에 따라 시행령 제50조제1호에 근거하여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등도 금지행위에 포함되었으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는 금지사항이 아니나,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의거 “음주·흡연행위 예방”에 관한 사항도 추가로 규정함.
- 따라서 검토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 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4

발의연월일: 2024. 5. .

발 의 자: 유승용、이순우、이성수 최봉희 의원(4인)

1. 제안이유

관내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보다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원 내에서의 음주 및 흡연행위에 대한 예방 등을 포함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어린이공원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나. 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안 제5조)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4. 5. 16. ~ 5. 20.)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따라”를 “따른”으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를 “향상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및 영등포구청장(이하”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로, “놀이터를”을 “놀이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관리주체” 란”을 ““관리주체” 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구분없”을 “구분 없”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관리·지원계획”을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지원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을 “의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각종”을 “어린이공원의 각종”으로, “유지·보수”를 “보수 및 정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안전사고”를 “어린이공원 등에서의 안전사고”로 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다양한 수목의 식재와 관리”를 “어린이공원 내 다양한 수목식재”로 하고,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준수 사항”을 “준수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어린이공원 등에서의 음주·흡연행위 예방

10.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어린이공원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6조) 제1항 후단 중 “법 등”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어린이 공원”을 “어린이공원 등”으로, “어린이 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 할”을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할”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7조) 중 “제6조제2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9조)제1항 중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10조) 중 “어린이놀이터 등”을 “어린이놀이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1. ---------- 따른 ---------- 향상을 위하여 ----------.
2. “어린이놀이터”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및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 ---- 놀이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를 ---.
3. “관리주체” 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 책임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
4. “통합놀이터”란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없이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4. ---------- 구분 없----------

놀이시설을 말한다.	----------.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 ----------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지원계획--.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의한 ---------- ---------- ----------.
1.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1. 어린이공원의 각종 ---------- 보수 및 정비
<신 설>	2. 어린이공원 등에서의 음주·흡연행위 예방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등	3. 어린이공원 등에서의 안전사고 ---
3. ~ 6. (생 략)	4. ~ 7. (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7. 다양한 수목의 식재와 관리 (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	8. 어린이공원 내 다양한 수목 식재---
8. 이용자의 준수 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등 설치	9. ------ 준수사항---------- ----------
<신 설>	10.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어린이공원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5조(행위의 제한) 어린이공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하는 경우 구청장은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가무, 고성, 방뇨 행위 2.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각종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4. 수목을 훼손하거나 캐내는 행위 5.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6.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7.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 장치를 이용하여 출입 및 주·정차하는 행위(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 8. 그 밖에 어린이들의 자유로	<삭 제>	

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 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② ---------- 어린이공원 등---------- ----------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할 ----------.
제7조(조치 및 협조요청) 구청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조치 및 협조요청) ---------- 제5조제2항---------- ---------- ---------- ---------- ---------- ----------.
제8조 (생 략)	제7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9조(예산확보·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	제8조(예산확보·지원) ① ----------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

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 등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표창) ------- 어린이놀이터---------- ---------- ---------- ----------. 제10조 (현행 제11조와 같음)